

2024년 3월말 기준 사 업 보 고 서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03월 31일 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및 제112조,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게시)합니다.

2024년 4월

한국양토양록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안현구



목 차

I . 주요 현황	1P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나. 이사회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3. 정관변경 사항	
II . 주요사업 추진 현황	15P
1. 교육지원사업	
2. 경제(유통)사업	
3. 신용(금융)사업	
III . 주요사업 추진 실적	17P
IV . 재무 현황	18P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I .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2024.01.17.	50	·의안 제1호 : 비상임감사 직무정지(안) 의결의 건
2024.02.16.	50	·의안 제1호 : 조합 정관(례) 개정의 건 ·의안 제2호 : 2023년도 결산보고서(안) 승인의 건 ·의안 제3호 : 출자 및 이용고 배당금 지급(안) 결정의 건 ·의안 제4호 : 임원 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 개정(안)의 건 ·의안 제5호 : 상임이사 선거 실시의 건 ·의안 제6호 : 사외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선거 실시의 건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결사항
2024.01.09	10	· 의안 제1호 : 상임이사 선거일 결정의 건 · 의안 제2호 : 조합원이 아닌 이사(사외이사)선거일 결정의 건 · 의안 제3호 : 비상임감사 직무정지(안)총회 상정의 건
2024.01.30	9	· 의안 제1호 : 신규조합원 가입의 건 · 의안 제2호 : 계약직직원 운영규정(모범안)개정의 건 · 의안 제3호 :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 위촉의 건 · 의안 제4호 : 2024년도 결산보고서(안) 정기총회 부의 심의의 건 · 의안 제5호 : 사업준비금 및 이용고배당 배당기준 결정의 건 · 의안 제6호 : 배당금 지급(안) 방법 심의의 건 · 의안 제7호 : 임원 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 개정(안) 심의의 건 · 의안 제8호 : 2024년 동일인당 대출한도 결정의 건 · 의안 제9호 : 2024년도 차입금 최고한도 책정의 건
2024.02.02	10	· 의안 제1호 : 조합 정관(례) 개정 심의의 건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결사항
2024.02.29	10	· 의안 제1호 : 교육지원사업비 취급기준(안) 변경의 건 · 의안 제2호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예) 개정의 건 · 의안 제3호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의 건 · 의안 제4호 : 양토 및 양록 자조금 집행의 건
2024.03.26	10	· 의안 제1호 : 신규조합원 가입의 건 · 의안 제2호 : 우선출자 소각의 건 · 의안 제3호 : 우선출자 모집한도 설정 및 모집 위임의 건 · 의안 제4호 : 2024년도 토끼수매의 건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가. 사무소 현황

(단위 : 개)

구 분		'23년 말 (A)	'24년 3월말 (B)	증감 (B-A)	비고
사무 소 수	본 점	1	1	-	
	지 점	4	4	-	
	기 타	2	2	-	도토장,곤지암
	계	7	7	-	

나. 인원

(단위 : 명)

구		분	'23년 말 (A)	'24년 3월말 (B)	증감 (B)-(A)	비고	
임		원	조합장	1	1	-	
			상임이사	1	1	-	
			이사	8	8	-	
			감사	2	2	-	
			계	12	12	-	
직	정규직	책임자	17	17	-		
		직원	39	39	-		
	비정규직	계약직	7	8	1		
		PT 등	15	15			
	계		90	91	1		

3. 정관변경 사항

현행	개정안
제7조(공고방법)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서면</u> 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7조(공고방법) ----- ----- ----- ----- <u>서면</u> <u>또는 문자 메시지·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송 등</u> ”으로 한다.
제14조의2(조합원의 우대) ① ~ ③ (생략) ④ 조합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비고) 제4항은 조합의 실정에 따라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40,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인 조합은 반드시 규정함	제14조의2(조합원의 우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0” ----- -----
제18조(출자) ① (생략) ② 조합원은 20좌이상의 출자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법인조합원은 100좌이상을 출자한다. (비고) 1. 출자좌수는 20좌이상 200좌이내(법인조합원은 100좌이상 1천좌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2. 본항의 출자좌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납입출자 미달 조합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일 현재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미달하는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9조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20좌 이상 -----, ----- ----- 100좌 이상을 출자한다. ----- 20좌 이상 200좌 이내(법인조합원은 100좌 이상 1천좌 이내)에서 ----- ----- 정함 ----- 본 항의 ----- ----- 함 ----- ----- 1년 이내에 ----- ----- ② 제1항 ----- 관하여는 제19조를 -----.

현행	개정안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조합원은 <u>100좌이상을</u> 출자한다. ③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u>10이내</u> 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u>품목조합연합회</u> 또는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에 대하여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없다. ② ~ ⑨ (생략) 제54조(임원의 선출) ① <제1레> ~ <제3레> (생략) ② ~ ④ (생략) 제55조(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전에 재임중인 <u>임원</u>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시점이 <u>선거기간중</u>인 경우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하고,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③ (생략) ④ 보궐선거(조합장의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비고) 1. 상임이사는 두되, 상임감사는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본 항 단서 중 “이사 또는 감</u>	----- - <u>100좌 이상을</u> -----. ③ ----- --. ----- <u>10 이내</u> -----. 제21조(우선출자) ① ----- ----- -----. <u>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u> ----- -----.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4조(임원의 선출) ① <제1레> ~ <제3레> (현행과 같음) <u>(비고) 선출방식 변경은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직전년도 12월까지 가능</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u>----- - <u>선거기간(선거일공고일 또는 추천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u>-----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 또는 선출될 예정이었거나 임기가 개시되었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이사 전원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비고) 1. 상임이사는 두되, 상임감사는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본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규</u>

현행	개정안
<u>사 전원의 결원으로</u>”를 “<u>상임이사의 임기와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u>”로 규정함 (비고) 2. 상임이사는 두지 아니하되, 상임감사는 두는 경우에는 <u>본 항 단서 중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u>”를 “<u>상임감사의 임기와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u>”로 규정함 (비고) 3.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모두 두는 경우에는 <u>본 항 단서 중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u>”를 “<u>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임기와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u>”로 규정함 ⑤·⑥ (생략)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생략) ② 제56조제1항제12호는 조합이 설립등기(합병 조합의 경우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생략) 12. <제1례>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12호 중 “1년”을 “2년”으로 변경하여야 함 (비고) 2. 제12호의 각 목 중 가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	<u>정함</u> <u>다만,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와 상임이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u> (비고) 2. 상임이사는 두지 아니하되, 상임감사는 두는 경우에는 <u>본 항 단서 단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다만, 이사 전원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와 상임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u> (비고) 3.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모두 두는 경우에는 <u>본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u> <u>다만,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와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u> ⑤·⑥ (현행과 같음)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1. (현행과 같음) 12. <제1례> 라. ----- ----- ----- ----- ----- ----- -----

[illegible]

현행	개정안
(비고) 4. 제12호의 의 금액을 변경하거나 <제1례>를 선택하여 제12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비고) 5. <제2례>를 선택하여 제12호를 변경하는 경우 제56조제1항제12호의 사업이용실적 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정관 시행일부터 1년간 제12호가목의 기준금액을 (비고)3.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임원결격사유 중 사업이용실적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56조제1항제12호가목의 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2년간으로 하되 조합원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일공고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④ ~ ⑫ (생략)	(비고) 4. ----- ----- ----- 제○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6조 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의결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고) 5. -----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조합은 임원을 대상으로 제1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6월말, 12월말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선거일공고일 또는 추천일 이후 ----- -----. ④ ~ ⑫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3. 4. (생략) 5. <u>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u>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u>그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u> 제110조(자격제한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 3. (생략) 4. <u>우리조합 및 다른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u>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u>그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u> 제112조(선거절차) ① 의장은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상임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성명·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어 <u>1개의 의안으로</u> 총회에 부의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 선출의안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제117조(자격제한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 3. (생략) 4. <u>우리조합 및 다른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함으로</u>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u>그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u> 5. (생략) 제138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조합은 조합장 임기개시일전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	----- 3. 4. (현행과 같음) 5. <u>다른 조합</u> ----- ----- <u>이사의 직을 사직함</u> ----- ----- -- <u>그</u> ----- 제110조(자격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다른 조합</u> ----- ----- ----- 제112조(선거절차) ① ----- ----- ----- 단수 또는 복수----- . 다만, 2회 이상 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선출하여야 하는 상임이사 수의 1배를 초과한 수로 추천하여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② ----- ----- ----- . 단, 제1항 단서의 경우 당선인 결정은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7조(자격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다른 조합</u> ----- ----- ----- 5. (현행과 같음) 제138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 ----- -----

현행	개정안
산출액이 5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u>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u>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38조의2(운영의 공개) ① (생략) ② 조합장은 정관 및 3월말·6월말·9월말 기준 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에 게시하고 사업보고서(정관이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 사항 포함)의 경우 조합원(대의원회를 둔 조합은 대의원)에게 <u>송부</u>하여야 한다. ③ ~ ⑧ (생략) 제139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생략)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나목·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u><신 설></u> ③·④ (생략) <u><신 설></u>	----- ----- ----- <u>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8조의2(운영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서면 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전송 등으로 통지</u>-----.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39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나목·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호, <u><삭제></u>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u>(비고) 제5조제1항에 제10호, 제11호 등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본 항 단서 중 “제7호”를 “제7호, 제10호” 또는 “제7호, 제10호, 제11호” 등으로 규정함</u>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1조의2(준법점검) 조합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조합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법점검책임자를 지정하고 <u>준법점검을 실시한다.</u>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 ▷ 2023년 결산총회 우수조합원(사료, 출자부문) 시상 : 9명, 470만원
- ▷ 2023년 결산총회 조합원자녀 학자금 전달 : 2명, 400만원
- ▷ 조합원 재해지원비(폭설피해) : 2명, 100만원
- ▷ 조합원 간담회 실시
 - 전국8개 지역별 조합원 간담회 실시 (기간 : 24.03.05 ~ 24.03.18)
- ▷ 조합원 영농자재지원
 - 축산약품교환권지급 : 336명 (5,290만원)
 - 축산자재 및 약품교환권지급 : 348명 (27,750만원)
- ▷ 양록 · 양토 자조금 : 양록 1,300만원, 양토 : 700만원
- ▷ 조합원 경·조사비 지원
 - 경 사 : 5명 (527만원)
 - 조 사 : 6명 (615만원)
- ▷ 조합원 복지사업 실시
 - 조합원 건강검진 지원(생년월일 홀수)
 - 조합원자녀 입학지원금 지원(초·중·고등학교)
 - 조합원 입원위로금 지원
 - 조합원 단체상해보험가입
 - 설명절 조합원 복지지원(한돈세트,떡국떡)

2. 경제(유통)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24년 3월말 (B)	달성률 (B/A)	전년동기 ('23년 3월)	전년동기 대비	
					증 감	성장률
구 매	4,057	936	23.07	801	135	16.84
마트상품	230	52	22.74	53	△1	△0.8
판 매	6,000	1,085	18.09	1,299	△214	△16.44
기 타	55	7	12.20	3	4	161.55
합 계	10,342	2,080	20.12	2,156	△75	△3.48

3. 신용(금융)사업

1) 상호금융예수금

(단위 : 백만원, %)

전년말 실적 (A)	연간계획(B)	'24년 3월말 (C)	달성률(C/B)	전년말대비	
				증감	성장률
611,099	670,000	651,448	97.23	40,349	6.60

◇ 조합원 및 고객님께서 우리조합에 맡겨 두신 예금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또는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 조합에서 목표로 세운 금액이 어느 정도 달성 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2) 상호금융대출금

(단위 : 백만원, %)

전년말 실적 (A)	연간계획(B)	'24년 3월말 (C)	달성률(C/B)	전년말대비	
				증감	성장률
551,592	610,000	558,688	91.59	7,096	1.29

◇ 조합원 및 고객님께 우리조합이 빌려 드린 대출금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감소했는지 또는 증가 하였는지를 나타냅니다.

3) 수수료(보험, 신용카드)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24년 3월말 (B)	달성률 (B/A)	전년동기 (C)	전년동기 대비	
					증 감	성장률
보 험	7,000	1,519	21.69	1,331	188	14.07
신용카드	900	196	21.77	194	2	0.10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24년 3월말 (B)	달성률 (B/A)	전년동기 (C)	전년동기 대비	
						증감	성장률
경제사업		10,342	2,080	20.12	2,155	△75	△3.48
	판 매	6,000	1,085	18.09	1,299	△214	△16.44
	구 매	4,057	936	23.07	801	135	16.84
	마 트	230	52	22.74	53	△1	△0.8
	기 타	55	7	12.20	3	4	161.55
상호금융 예수금	잔 액	670,000	651,448	97.23	589,932	61,516	10.43
	평 잔	635,750	625,757	98.43	603,028	22,729	3.77
상호금융 대출금	잔 액	610,000	558,688	91.59	513,311	45,377	8.84
	평 잔	585,000	557,355	95.27	522,033	35,323	6.77
보 험 료		7,000	1,519	21.69	1,331	187	14.07
신용카드		900	196	21.77	191	3	0.10

IV.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유동자산	8,007	I.유동부채	23,462
현금	1,991	외상매입금	11
외상매출금	336	단기차입금	12,900
재고,생물자산	1,650	기타유동부채	10,552
기타유동자산	4,029	II.금융업예수금	651,448
II.금융업예치금	128,876	III.금융업차입금	255
III.금융업대출채권*	546,779	IV.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
IV.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	V.비유동부채	△49
V.비유동자산	27,126	장기차입금	
투자자산	8,494	기타비유동부채	△49
유형자산	15,766	부채 합계	675,116
무형자산	10	I.출자금	20,858
기타비유동자산	2,856	II.자본잉여금	
		III.자본조정	△85
		IV.기타포괄손익누계액	3,510
		V.이익잉여금	11,389
		자본 합계	35,672
자산 총계	710,788	부채와 자본 총계	710,788

※ 금융업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계수임

※ 백만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3년 3월말 (A)	'24년 3월말 (B)	증 감 (B-A)
I.영업수익	11,181	11,048	△133
II.영업비용	6,697	7,156	459
III.매출총이익(I - II)	4,484	3,892	△592
신용사업	4,286	3,686	△600
경제사업	198	206	8
IV.판매비와관리비	2,378	2,454	76
V.영업손익(III-IV)	2,106	1,438	△668
VI.교육지원사업준비	239	168	△72
VII.영업외손익	△80	△14	66
VIII.법인세차감전손익	1,786	1,255	△531
IX.법인세비용 [※]	-	-	-
X.당기순손익(VIII-IX)	1,786	1,255	△531

※ 법인세 비용은 연말 일괄 계상되어, 1/4분기 말은 미 표시.

※ 백만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